
서울 패션 · 봉제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

[과업지시서]

2026. 04.

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

본 과업에서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를 ‘발주기관’이라 하고, 계약자를 ‘계약상대자’라 한다.

1. 과업명

- 서울 패션·봉제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

2. 과업기간

- 착수일로부터 6개월

3. 소요예산

- 금36,920,00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4. 과업배경

- 서울 패션·봉제산업은 도심 제조업의 핵심 기반으로서 고용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- 그러나 공정단가 구조의 불투명성, 열악한 노동환경, 종사자의 고령화 및 청년층 유입 부족 등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
- 또한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 데이터가 부족하여 정책 수립 및 산업 지원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서울 도심 봉제 제조공장의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·분석하고 산업 구조를 진단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

5. 과업의 목적

- 봉제 제조공장의 산업 실태 파악
- 생산역량 및 설비 특성 분석
- 산업 기초 데이터 구축
-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

6. 과업 주요 내용

1) 실태조사 수행

- 서울 도심 봉제 제조공장 약 200개소 내외 조사
 -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 사전 승인 후 개소 조정 가능
- 조사내용
 - 공정단가 구조
 - 노동시간 및 근로조건
 - 작업환경 및 안전
 - 설비 현황 및 생산방식
- 조사방법
 - 설문조사 및 현장 방문조사 병행
 - 사업주 및 종사자 인터뷰 실시
 - 조사원 교육 실시 및 운영계획 포함
 -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체 표본의 일정 비율(10% 이상)에 대해 검증조사 실시
 - 응답 오류, 허위응답 등에 대한 검증 및 보정 기준 마련

2) 산업 분석

- 공정단가 및 생산구조 분석
-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분석
- 생산역량 및 설비 특성 분석
- 산업 구조 및 공급체계 분석

3) 산업 기초 DB 구축

- 제조공장 데이터베이스 구축
 - 데이터 구축 시 개인정보 및 사업체 식별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여야 하며, 관련 법령(개인정보보호법 등)을 준수하여야 함
- 생산 및 설비 정보 체계화
- 정책 활용 가능한 기초 데이터 구축

4) 정책 제안

- 산업 문제점 및 구조적 한계 도출
- 노동환경 개선 및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제시
-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 대안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

7. 계약방식
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

1. 착수보고

-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
- 다음 사항 포함
 - 과업수행계획서
 - 세부 일정(공정표)
 - 참여인력 구성 및 업무 분장
 - 조사 설계 및 수행 방법
 - 품질관리 및 리스크 대응 방안
- 발주기관과 협의된 장소에서 발표 실시
- 자료는 인쇄본 및 전자파일 제출

2. 중간보고

- 수행기간 50% 시점
- 보고내용
 - 조사 수행 현황(조사 대상 확보율 및 응답률)
 - 중간 분석 결과(데이터 품질 점검 결과)
 - 문제점 및 개선방안(조사 진행상 문제점 및 보완대책)
 - 향후 추진계획

3. 최종보고

- 계약 종료 전
- 보고내용
 - 최종 조사 결과
 - 종합 분석 및 진단
 - 정책 제안 및 실행방안
 - 연구 결과 활용 방안
- 발주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성과물 제출

1. 과업의 범위

- 실태조사, 분석, 데이터 구축, 보고서 작성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를 포함함
-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, 자료수집, 분석 및 성과물 작성 등 제반사항을 수행하여야 함

2. 과업 수행기간

- 과업은 계약기간 내 완료하여야 하며,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
 -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발생 시
 - 발주기관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
 -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

3. 업무 보고 및 협의

-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함
- 착수·중간·최종보고 외에도 발주기관 요구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, 중요 사항은 사전 승인 후 수행
- 주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행

4. 과업 수행 일반사항

-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

- 착수서류에는 과업수행계획서, 책임자의 선임계, 과업참여자의 명단 및 인적사항, 참여인력 투입계획, 보안각서, 예정공정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-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 및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휘·감독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
-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변경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-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함

※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이 발생한 경우,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

5. 계약 해지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 - 정당한 사유 없이 과업 착수를 지연한 경우
 -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계약조건 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- 조사 목표 미달성 또는 성과물 기준 미달 시

6. 보안대책

- 계약상대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수행 대표자 및 종사자 등 참여 인원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
-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다루는 경우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고,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하여야 함

- 모든 성과품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소유할 수 없으며, 본 과업 수행 목적 이외의 용도로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복사, 유출 또는 사용할 수 없음
-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

7. 하도급

-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
-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으로 처리할 내용, 하도급자 선정 기준, 하도급 범위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-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, 그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
-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는 해당 용역 전체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짐
-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은 경우,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함

8. 책임

- 계약상대자는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, 용역결과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발주기관에 예산 손실 등을 초래한 경우 이에 대한 변제 및 민·형사상 책임을 짐
- 용역 수행 과정에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와의 합의, 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짐

- 또한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인하여 해당 용역결과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,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함
- 성과물의 오류, 누락, 부정확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

1. 성과품 내용

- 최종보고서 : A5 size, 공판, 국문 30부
 - 보고서는 정책 활용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분석 및 도표를 포함
- ※ 보고서의 규격, 분량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
2. 성과품 작성 기준

- 모든 성과품의 작성 및 제작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함
- 모든 성과품은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, 전문용어 또는 의미 전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문, 한문 등을 병기할 수 있으며,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함
- 성과품은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, 작성 순서 및 편집 방법 등은 인쇄 최소 10일 이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
- 성과품의 종류, 규격 및 부수는 필요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
- USB에 저장되는 전산 데이터는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하며, 사용된 파일 및 글꼴은 일반적인 Windows 환경에서 확인·수정·편집이 가능하여야 함

3. 저작권

- 본 연구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의 작성권한은 발주기관에 귀속됨
- 발주기관은 정책상 필요 시 연구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하여 활용할 수 있음